

<음성확인서 FAQ 관련 주요 개정사항, '22. 3. 2.>

구분	기존	개정	사유
경유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최초출발국 또는 경유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한 음성확인서 인정 원칙	출발일 48시간 이내 기준만 준수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발급국가 상관없이 모두 인정 가능(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발급한 경우도 인정 가능)	현행 반영
단순재검출(확진 후 완치자) 추정 내국인 항공편 탑승 등 입국지원(3.7일 입국자부터 적용)	<신설>	출발일 기준 10일 이전 40일 이내 확진 및 치료한 내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제84차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결과('22.2.24.)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022. 3. 2.(수)>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Antigen, AG, Ag) · 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3. "PCR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 * (예시) '22.1.21. 10:00 출발한 경우에는 22.1.19.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2일)

구분	세부기준
입국일이 '22.1.20. 이후인 경우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한 음성확인서 ※ 검사 및 발급일 모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 항만 입국자는 입국날짜 관계없이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적용(현행 유지)

4.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 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5번 질의 참고)은 준수
-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5.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 NAATs, PCR, LAMP, TMA, SDA 등

6. 'PCR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7.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필리핀, 우즈벡)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에 한하여 인정
 -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이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8.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가능
-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를 입국한 경우) B국가(경유국)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 A국가(최초출발국)에서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
- ※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 출발국가(또는 경유국)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가능(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 및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
 - <예시> A국가(2.28일 출발) → B국가(2.28일 도착, **3.1일 출발**) → 우리나라(3.1일 도착)

구분	출발 기준	비고
B국가를 입국(체류)한 경우	3.1일(B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발급국가는 상관 없음 (반드시 A국가나 B국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
B국가를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한 경우	2.28일(A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10.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한국 입국이 아닌 경우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1.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2.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외국인),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3.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요건에 부합하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입국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212~)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 FAQ 18번 참고)
 -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
 - ※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경우 조치 사항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4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5일(시설사용료* 60만원(12만원/일) 자부담) 후 **자가격리 2일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은 제외)

16.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조치사항?

-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국내 도착 후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외국인)의 경우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
 - 다만, 현지 입국 불허 등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귀국항공편 탑승 가능(본인 입증 책임)
 - ※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은 입국금지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 강제출국 요청 가능

17.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 (공항 48시간, 항만 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18. (신설)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 준비서류 및 입국절차는?

- (대 상)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격리해제된 내국인(37.5℃ 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
- (준비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또는 확진으로인한 격리시작) 여부

구 분	확진일	출발일
입국지원 가능 예시(1)	'22. 1. 26. (‘출발일’ -40일)	3. 7.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가능 예시(2)	'22. 2. 25. (‘출발일’ -10일)	3. 7.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불가 예시(1)	'22. 1. 25. (‘출발일’ -41일)	3. 7. (입국 지원 불가)
입국지원 불가 예시(2)	'22. 2. 26. (‘출발일’ -9일)	3. 7. (입국 지원 불가)

- (입국절차) 입국 전 항공사 1차 확인 후 항공편 탑승 → 입국 시 검역소 최종확인
 -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조치
- (시 행) 3.7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 (부정서류 제출 시)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위·변조 문서 제출 등 부정한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해 고발*조치 가능
 - *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 검역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결과, 증빙서류 미소지나 부정적 서류로 확인될 시에는 5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